

2024년도 제4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4. 4. 2.(화요일), 10:30
- 장 소: 대면 심의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김성주(분과위원장), 김정숙, 안효질, 손수호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4-41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박현주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안건 1,178건(안건번호 제2024-23492호~24669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4-23492호~23542호는 방송사업자 등의 복제권, 전송권,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는 기기를 판매하는 게시물을 전송한 사안으로,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 행위가 저작권 등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4-23543호~23546호는 ☆☆☆ 블로그에서 뮤지컬의 불법복제 영상 등 교환 판매 게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4-23547호~23578호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 p DF 파일을 판매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4-23579호~23582호는 ☆☆☆ 블로그, 카페 및 웹하드에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함.
- 그 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안건번호 제2024-23583호~24669호 게시물 2,437건은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함.

다만 위 사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 3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총 103개의 URL 정보에 관한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안건번호 제 2024-2435호~2537호)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3개에 접속할 수 있는 103개의 URL 정보에 관해 검색결과 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김성주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 제46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4-41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김성주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B 위원: 민원인이 신고한 내용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식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 외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됨.
- C,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김성주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민원 정보 및 저작물명과 관련한 부분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3. 안건상정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박현주 전문위원: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 ‘■■■■■■■ ■■■■■■■’, ‘●●●●●●●●●●’, ‘◆◆◆’, ‘○○○○’ 등임. 심의위원님께서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김성주 분과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현주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38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2,595건의 복제물 등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 박현주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4-23492호~23542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쇼핑몰 사이트에서 불법 스트리밍 기기를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께서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B 위원: 해당 기기를 이용하면 전세계 실시간 방송을 볼 수 있는 것인가?

- 김준근 선임: 기기에서 지원하는 방송은 무료로 볼 수 있음.
- D 위원: 이런 기기에서 이용 가능한 저작물은 누가 서비스 하는 것인가?
- 김준근 선임: 운영자가 해외 서버에 저작물을 올려놓고 서비스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D 위원: 서버만 운영하지 않고 기기를 보급·판매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소프트웨어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는가?
- 김준근 선임: 기기 한 대당 20~40만원으로 고가에 판매되고 있고 지난주에도 기기 업데이트를 한 것으로 볼 때 정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임. 그리고 저작물 명칭인 ◇◇◇◇◇는 본 건과 같은 불법 스트리밍 기기를 뜻하는 단어로 거의 고유명사화가 되어 있음.
- A 위원: IPTV 등은 사용 시 계속 요금을 지불해야 하고 신원도 확인 가능한데, 이런 기기는 한번 구매하면 신원 확인 없이 계속 사용 가능함.
- D 위원: 이런 기기는 정식 서비스에 사용되는 용도와 관련이 있는가?
- 김준근 선임: 오로지 불법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B 위원: 판매 시장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가?
- 김준근 선임: 신고 건수를 바탕으로 추정하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됨. 오

늘 심의대상 게시물이 100건 정도이고 내일도 50건가량에 대한 심의가 예정되어 있음.

- D 위원: 불법복제물 수거 조치에는 기계나 장치가 포함되는데 시정권고에는 기계, 장치가 없고 불법복제물이나 정보 즉 어떤 판매를 유도하는 게시물도 정보에 포함된다고 보고 심의를 하고 있음. 그러나 비록 기기 제작자 등이 관련 서버를 운영하고 있고 기기 자체가 적법 용도로 쓰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본 건은 저작권 침해의 도구를 판매하는 것으로서 침해물도, 침해물의 판매정보도 아닌 침해하는 기기의 판매 정보이기 때문에 두 단계를 거쳐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지는 것임. 시정권고는 자율적인 조치를 유도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조치에 응하지 않는 경우 문체부 장관의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 건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함에 있어 방어논리가 약하다는 문제가 있음. 불법복제물 등에 관한 법령상 문언을 정비하여 심의대상 게시물과 같은 기기 판매 게시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A 위원: 불법 스트리밍 기기가 불법복제물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심의 과정에서 논의한 사례는 없는 것 같음. 저작권 침해 행위의 방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심의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만, D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복제물 등에 해당하는 어떤 물건 자체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는 저도 본 적이 없음. 이 부분에 대해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안효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함.
- 박현주 전문위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음.
- 김성주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전번호 제2024-23492호~23542호에 대해 원안대

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위원: 심의 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C, D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므로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임.
- 김성주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4-23492호~23542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박현주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4-23543호~23546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 블로그에 게시된 뮤지컬 무단촬영물 판매 또는 교환 게시물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김성주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전번호 제2024-23543호~23546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C, D 위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김성주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4-23543호~23546호는 게시물

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박현주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4-23547호~23578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을 판매중인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김성주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건번호 제2024-23547호~23578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위원: 심의 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C, D 위원: 저작권 침해 정보인 '불법복제물등'으로서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가결 의견임.
- 김성주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4-23547호~23578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박현주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4-23579호~23582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 블로그, 카페 및 웹하드에 게시된 불법복제물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주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전번호 제2024-23579호~23582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C, D 위원: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함.

- 김성주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4-23579호~23582호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다만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박현주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4-23583호~24669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모두 불법 복제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전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전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전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무계획’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4-24087호(‘전현무계획’)는 2024.02.16. 방영중인 한국 방송으로 웹하드에서 100포인트에 판매중임.

(‘사신의 신부 -남은 생명 7일에서부터 시작되는 행복’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4-24448호(‘사신의 신부 -남은 생명 7일에서부터 시작되는 행복’)는 2024.01.부터 연재중인 일본 만화로 웹하드에서 30포인트에 판매중임.

(‘한컴오피스 2024’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4-24669호(한컴 오피스 2024)는 2023년 발매한 소프트웨어로 웹하드에서 100포인트에 판매중임.

- 김성주 분과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전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전번호 제2024-23583호~24669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심의위원 전원: (심의안전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모두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을 확인하였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김성주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제2024-23583호~24669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4-23492호~23542호(순번 1번~51번), 제2024-23543호~23546호(순번 52번~55번), 제2024-23547호~23578호(순번 56번~87번), 제2024-23579호~23582호(순번 88번~91번), 제2024-23583호~24669호(순번 92번~1178번)는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하여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 12쪽부터 14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4-2435호~2537호(순번 1번~103번)는 구글 검색결과 제한 요청을 가결함”

4. 폐회 선언

○ 김성주 분과위원장이 제4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4년 제4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 4. 9.

분과위원장 김성주

위원 김정숙

위원 안효질

위원 손수호